

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규정

제7조(교육과정의 이수)

② 전공 교육과정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재입학, 전과 및 전공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적변동 당시 소속 학과(전공)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전공과목의 이수)

② 전공필수 과목은 학과(전공)별로 최소한으로 편성하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필수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)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과목은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부터 전 학과의 전공필수로 지정한다. 다만, 신학부, 의예(학)과, 간호학과,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전출학과에서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과목을 기 이수한 전과생 및 복수전공 학과는 제외한다.